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31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최인호·박상혁·박재호

강선우 · 전재수 · 김병욱

송옥주 · 이학영 · 조응천

권칠승 · 박광온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그런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 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 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 등).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7조제1항제7호 중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를 "하게 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0조제4항을"을 "제10조제5항을"로 한다.

7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제58조제3호 중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 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자"로 한다.

법률 제1741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제59조제3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의 발급 등) ①·② (생 략)	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
	<u> </u>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3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	
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	
<u>니 된다</u> .	
<u><신 설></u>	④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
	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
	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u>④</u> ・ <u>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	취소 등) ①
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方와 자격증을 대여한경우

<신 설>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의2. ~ 11. (생략)

② ~ ⑤ (생 략)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7410호 문화재수리 등에

- 1. 2. (생략)
-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

<u>.</u>
1. ~ 6. (현행과 같음)
7
크게 쥐 거 ()
<u>하게 한 경우</u>
7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5항을
8의2. ~ 11.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1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벌칙)
1. • 2. (현행과 같음)
3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 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 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u>하</u> 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 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 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 한 자

4. (생 략) <신 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 1. 2. (생략)
- 3. <u>제10조제4항</u>(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 4. ~ 7. (생략)

	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
	무를 한 자
1	(현행과 같음)
<u>D.</u>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
	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15C	트)조(벌칙)
05	(L()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5항
•	

4. ~ 7. (현행과 같음)